

항 소 장

항소인(원고) ○○○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항소인(피고) ♦◆◆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항소

위 당사자간 ○○지방법원 20○○가단○○○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하여 항소인(원고)은 같은 법원의 20○○. ○○. ○.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(항소인은 위 판결정본을 20○○. ○○. ○○.에 송달 받았습니다).

원판결의 주문표시

-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항 소 취 지

- ---- 기소된다. 2. 피고(피항소인)는 원고(항소인)에게 금 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분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역 15%이 비스레 작가
- 3. 소송비용은 1, 2심 모두 피고(피항소인)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항 소 이 유

추후 제출하겠습니다.

첨 부 서 류

1. 항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0. 00.

위 항소인(원고)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제1심 법원(민사소송 법 제397조 제1항)	제출기간	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이 이내, 다만 판결서 송달 전 기계
제출부수	항소장 1부 및 상대방 수만큼 부본제출	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
불복절차 및 기간	<원심 및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각하결정> ·즉시항고(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, 제402조 제2항) ·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444조) <항소심 판결> ·상고(민사소송법 제422조) 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, 제425조) 		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
※ (1) 관 할

- 1. 고등법원 관할 사건
 - 지방법원합의부의 판결(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)
- 2. 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 :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

※ (2) 인 지

항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(소가)에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1.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함(민사소송등인지법 제3조). 다만, 대법 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 현금 납부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)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상소 및 재심 >> 상소